

지진인증 지원사업 개요

- (사업 목적) 강제할 수 없는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 및 내진안전성 증진을 위해 지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
- (사업 대상) 지진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(공공 제외)
- (사업 기간) '26. 1. 1 ~ 12. 31.
- (지원 형태) 자치단체 경상보조
 - 성능평가비(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%, 지방비 30~40%, 민간자부담 0~10%)
 - 인증수수료(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%, 지방비 30~40%, 민간자부담 0~10%)

※ 국비 기준, 1건당 최대 지원액은 2,400만(성능평가 1,800+인증수수료 600)
- (추진 주체) 지방자치단체(시·도 및 시·군·구)
- (추진 절차) 수요 확보 → 사업 실시 →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

지진인증사업 추진 절차

